

석사학위논문

사진아카이브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 연구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이 선 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호신

사진아카이브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Use of
Orphan Work in Photography Archives

2024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이 선 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호신

사진아카이브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Use of
Orphan Work in Photography Archives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이 선 민

이선민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정 경 희 (인)

심 사 위 원 박 지 영 (인)

심 사 위 원 이 호 신 (인)

국 문 초 록

사진아카이브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이 선 민

최근 들어 사진이 가진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사진아카이브는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을 전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들이 소장한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진기록물의 상당수는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한다. 사진기록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4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진아카이브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진기록물의 저작권

관련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진아카이브에서의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국외 유사 저작권 제한 규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절차를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였다.

그 결과,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용 주체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둘째,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이용대상 저작물의 범위가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공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의 경우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셋째, 상당한 조사에 따른 정보조회처 가운데 대부분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정보조회처 가운데 상당수가 예술기관에 해당하며 사진기록물과 관련된 기관이 부재하였다. 넷째, 제호와 저작자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진기록물의 경우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해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기관이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가 미공표저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미공표 사진기록물 또한 권리자불명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상당한 조사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까지 제공하는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하되, 사진기록물을 제공하는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상당한 조사에 있어 제호 및 저작자명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검색 대신 이미지 기반의 검색이 가능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사진아카이브, 사진기록물, 권리자불명 저작물, 저작권법 제35조의4,

상당한 조사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
| 1.3 선행연구 | 3 |
| 1.3.1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 4 |
| 1.3.2 권리자불명 저작물 서비스에 관한 연구 | 5 |
| II. 사진기록물과 저작권 | 10 |
| 2.1 사진기록물의 특징 | 10 |
| 2.2 사진기록물의 저작물성 | 12 |
| 2.3 사진기록물의 저작권 정보와 권리자불명 저작물 | 15 |
| 2.4 소결 | 19 |
| III.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제한 규정 | 21 |
| 3.1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4 | 22 |
| 3.2 EU 『권리자불명 저작물 지침』 | 26 |
| 3.3 이스라엘 『저작권법』 제27A조 | 31 |
| 3.4 소결 | 32 |
| IV. 사진기록물의 상당한 조사 | 37 |
| 4.1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 상당한 조사의 기준 | 37 |
| 4.2 정보조회처 검색 항목 및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조사 | 41 |
| 4.3 소결 | 53 |
| V. 논의 및 제안 | 55 |

| | |
|---|----|
| 5.1 문제점 | 55 |
| 5.1.1 기록물관리기관 배제 | 55 |
| 5.1.2 미공표 사진기록물 이용 불가 | 56 |
| 5.1.3 『저작권법』 제16조의3 상당한 조사의 기준 문제 | 58 |
| 5.1.3.1 정보조회처 선정의 문제 | 58 |
| 5.1.3.2 텍스트 기반 검색의 문제 | 59 |
| 5.2 개선방안 | 60 |
| 5.2.1 문화시설의 범위 확대 | 61 |
| 5.2.2 미공표 사진기록물의 이용 | 61 |
| 5.2.3 『저작권법』 제16조의3 상당한 조사의 기준 개정 | 62 |
| 5.2.3.1 정보조회처 재선정 | 62 |
| 5.2.3.2 이미지 기반 검색 구축 | 63 |
| VI. 결 론 | 64 |
| 참 고 문 헌 | 67 |
| ABSTRACT | 71 |

표 목 차

| | |
|--|----|
| [표 1] 『저작권법』 제35조의4 적용대상 | 23 |
| [표 2] EU 『지침』 저작물 유형별 정보조회처 | 29 |
| [표 3] 저작권 제한 규정 이용 주체와 대상 저작물의 공표요건 비교 | 33 |
| [표 4] 사진기록물의 상당한 조사 정보조회처 | 42 |
| [표 5] 상당한 조사 정보조회처별 검색 항목 | 51 |
| [표 6] 상당한 조사 정보조회처별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52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EUIPO 권리자불명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 30 |
| [그림 2] 저작권등록부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43 |
| [그림 3] 저작권등록부 저작권 검색 항목 | 43 |
| [그림 4] KOLAA IMAGE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44 |
| [그림 5] KOLAA IMAGE 검색 항목 | 45 |
| [그림 6]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45 |
| [그림 7]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검색 항목 | 46 |
| [그림 8] 국가자료종합목록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46 |
| [그림 9] 국가자료종합목록 검색 항목 | 47 |
| [그림 10] UCI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47 |
| [그림 11] UCI 검색 항목 | 48 |
| [그림 12]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48 |
| [그림 13]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검색 항목 | 49 |
| [그림 14]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49 |
| [그림 15] 미술은행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50 |
| [그림 16] 미술은행 검색 항목 | 50 |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진은 지나간 사건의 현장을 기계적인 복제를 통해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기록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들어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진이 가진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수집된 사진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과거 사건을 증언하고 기억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박물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민간기관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사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사진기록물을 중점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진아카이브를 통해 소장 사진기록물을 실물로 전시하거나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온라인 환경에서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사진은 빛이나 복사 에너지의 작용을 통하여 감광성의 물체 위에 피사체의 형태를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일컫는다(Britannica, 2024).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피사체를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해 재현한다는 점에서 사진은 일종의 기록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피사체의 포즈나 조명과 노출 등을 조절해서 촬영자의 고유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진아카이브를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이 소장한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진기록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진기록물의 상당수는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재산권자는 파악하였지만, 그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영국의 한 박물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사진 컬렉션의 90%에 해당하는 1,700만 장의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영국 국립아카이브(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라 한다)의 Image Library에서는 1883년부터 1912년까지 생산된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8만 장의 사진기록물 중 약 95%가량의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할 수 없었다(Vuopala, 2010).

이렇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권리자불명 저작물’이라 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일컫는다. 상당수가 상업적인 가치가 낮아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에 대한 행사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아카이브가 수집한 사진기록물 가운데 상당 부분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활용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이 바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해당 조항은 법령이 정한 국·공립 문화시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또한, 사진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사진아카이브에 소장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해서 사진아카이브가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 및 해외의 유사 입법사례 등을 비교하여 그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가운

데에서도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사진기록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사진기록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법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기록물의 저작권 관련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진기록물의 특징을 정리하고, 판례를 통해 사진기록물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후 사진기록물의 저작권 정보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였다.

둘째, 사진아카이브에서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국외 유사 저작권 제한 규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과 유사한 사례로 EU 『권리자불명 저작물 지침』과 이스라엘 『저작권법』 제27A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와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절차를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절차에 따른 정보조회처의 특징과 검색 항목 및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하였다.

넷째, 사진기록물의 저작권 관련 특징 분석,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국외 유사 저작권 제한 규정을 분석, 상당한 조사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는 사진아카이브를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와 문화유산기관에서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있다.

1.3.1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저작권 쟁점을 발생한다. 이런 까닭에 아카이브에서 기록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파악한 뒤 해결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이호신(2013)은 공연예술현장과 공연예술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연예술기록물은 현장을 기록한 기록물과 공연을 다룬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수집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저작권 쟁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 뒤에 공연예술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공연 자체, 현장생산기록, 독립생산기록으로 구분하며, 기록물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 및 대응방향을 제안하였다. 하나의 공연예술로 인해 생산된 수많은 기록물의 경우 다양한 저작권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저작권 처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수진, 신동희(2016)는 비영리 목적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소장한 이용자기여콘텐츠의 저작권 쟁점을 파악하고, 이용자기여콘텐츠의 수집 및 활용 방안을 위해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아카이브는 홈페이지 내에 저작권을 포함한 법률적인 안내와 아카이브의 입장 등을 표명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명시할 것. 둘째,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할 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동의서 등을 받을 것. 마지막으로, 개별 콘텐츠에 대한 CCL 및 저작재산권자를 표시하고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양소현(2018)은 시각예술 아카이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시각예술기록의 활용을 증진하고자 국가적·정책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시각예술 아카이브에 시각예술기록물 이용허락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예술 분야에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시각예술 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표준계약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 등의 저작권 면책규정에 아카이브와 박물관을 추가로 명시해야 하고, 시각예술 분야에서 공정이용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활발한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 쟁점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타 저작권 관련기구, 문화유산기관 등이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지은, 김지현(2023)은 서비스를 염두에 둔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 소장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미술 아카이브 업무 절차를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그 이후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자 미술 아카이브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쟁점과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술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쟁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실무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개별 사안별 저작권 매뉴얼 및 질의 응답서를 개발하고 유관기관에 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3.2 권리자불명 저작물 서비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기관에서의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저작권법』 제35조의4가 신설되기 이전의 연구에서는 도서관이나 기록물관리기관이 소장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를 통해 서비스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최진원(2011)은 도서관에서 『저작권법』 제50조를 통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외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 관련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저작권법』 제50조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자가 창작한 다른 저작물도 편승 조항을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당한 노력을 위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저작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50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경희(2014)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 및 관련 시행령을 검토하고, 국외 권리자불명 저작물 관련 입법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 소장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제50조를 통해 디지털화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경우 관외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법』 제50조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사전에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권리자불명 저작물 서비스하던 도서관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소연(2016)은 기록관과 도서관 등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수월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외 법정허락제도 중 우리나라의 ‘상당한 노력’과 유사한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저작권법』 제50조의 상당한 노력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상당한 노력의 네 가지 요건 중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 검색도구’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권리자불명 저작물 서비스에 있어 사서 및 기록관리 담당자에게 상당한 노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록관과 도서관 등의 경우 상당한 노력의 절차와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재책정 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장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나빈(2016)은 도서관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대량 디지털화하는 것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사례를 분석한 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제50조의 예외 규정을 두어 도서관에서의 대량 디지털화의 경우 이용주체와 목적에 비추어 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상금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 둘째, 『저작권법』 제50조를 통해 도서관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서비스할 경우 『저작권법』 제31조를 통해 해당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관외 전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4가 신설된 이후에는 도서관이나 기록물관리기관이 소장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이호신, 정경희(2020a)는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에 기록관리기관이 배제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외 사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개념과 그 외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기록관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기관이 수집하는 대부분의 기록물은 미공표 저작물이기 때문에, 미공표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록관리기관이 소장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은 다른 문화시설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가치 있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호신, 정경희(2020b)는 『저작권법』 제35조의4가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 실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기존 법률과 개선방안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저작권법』 제31조와 『저작권법』 제50조와 함께 비교·분석한 뒤,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화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상당한 조사의 절차가 모호하며, 실무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진원(2021)은 문화시설이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활용하여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 이에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권리처리를 위한 해외 사례와 『저작권법』 제 35조의4 및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의 현황을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절차가 『저작권법』 제50조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긴 하나, 공익목적의 대량 이용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조사의 기준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무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 안내서, 지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저작권법』 제35조의4는 『저작권법』 제50조에 비해 수수료·보상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여전히 보상금은 실무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손실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보상금의 규모를 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먼저,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수의 저작권 쟁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생산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더욱 극심해졌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아카이브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 매뉴얼 개발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이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서비스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제50조 및 제35조의4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4가 신설된 이후의 연구에서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시설의 범위, 상당한 조사, 보상금 산정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주로 제안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진아카이브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 기록물을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와는 다르게 사진아카이브에 소장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의 저작권 쟁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에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실효성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II. 사진기록물과 저작권

2.1 사진기록물의 특징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인 사진(photograph)은 ‘빛(phos)’과 ‘그리다(Graphos)’의 합성어로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이다(Daval, Jean- Lue, 1999. p.9). 『사진용어사전』은 사진에 대하여 “물체로부터 발사 또는 반사된 빛을 렌즈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상(像)을 맺게 하고 그 상을 화학적으로 처리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유경선 외, 1995).

19세기 초 다게르(Jacque-Mandet Daguerre)에 의해 사진이 처음 발명된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작고 가벼운 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며 필름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해졌다. 점차 사진기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을 찾아가 인간의 행적과 업적, 전쟁 등의 당대 사건이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Daval, Jean- Lue, 1999. p.68-69). 특히,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욱 극대화되었다(김소영, 2010). 사진은 사진술과 사진기의 발전으로 인해 기록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사진이 담고 있는 신빙성은 증거와 자명성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documentary)라고 부를 수 있으며, 실재하는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Newhall, Beaumont, 1998).

오늘날 사진이 기록의 영역에 포함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SAA 기록학 용어집』은 사진기록물(photographic archives)을 “개인, 가족, 조직이 활동 혹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및 수집하는 것으로,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영구적인 가치로 인해 보존되는 사진”으로 정의하고 있다(Pearce-Moses R, 2005). 또한, 『Encyclopedia of Archival Science』는 아카이브 소장 사진기록물(photographic records)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이나 예술적 가치 때문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의사소통, 의사결정, 책임감, 기억 등 다양한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때문에 보존된다고 언급하고 있다(Duranti, Franks, 2015). 즉, 사진기록물이란 개인 및 단체가 활동이나

업무 과정 중에 생산 및 수집하는 사진으로 인간 활동의 다양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기록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기록물은 대중적이며 기록화에 용이하다. 소형 카메라의 발명은 사진기자들에게 하여금 사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지금은 누구든지 단순하게 사진기록물을 남기고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텍스트에 비해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하며 정보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도가 높으며, 짧은 시간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영상에 비해 기억하기 훨씬 쉽다. 이러한 까닭에 사진기록물은 다른 유형의 기록물에 비해 기억하기 쉽고 수요도가 높으며 누구든지 기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배은경, 박주석, 2009).

둘째, 사진기록물은 텍스트 유형의 기록물에서 파악할 수 없는 생동감을 불러 넣어주며,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건 현장 및 인간 활동에 대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텍스트 유형의 기록물은 풍부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생산맥락을 비롯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직접 접하지 못한 사건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전달해줄 수는 없다. 반면에, 사진기록물은 사건 현장을 가깝게 포착하고 재현해내는 과거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한다(김소영, 2005). 이는 기록물로 하여금 사건 현장에 대한 생동감과 현장성을 반영해준다. 또한, 사진기록물의 생산자는 해당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공간적·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동일 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진은 현장 존재에 대한 증명이며, 현장 존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김소영, 2010).

셋째, 사진기록물은 기록성(Social Documentary)과 예술성(Artistic Originality)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다. 사진기록물의 기록성은 진실을 증거하며, 믿을 수 있다는 신뢰에서 출발하는 개념으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김철권, 1998). 보통 사람의 삶에 밀착한 모습을 담은 기록으로서의 사진은 상업적·예술적 가치가 낮을지라도 문화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진 아카이브를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사진기록물의 예술성은 미술과 과학의 영역이 융합되어 시각예술로

서 사진의 특징을 의미하며, 새로운 촬영기법을 통해 사진작가의 의도가 반영되며 등장하였다(김철권, 1998). 예술성은 미술계로 하여금 사진을 수용하게 하였고 전문적인 사진작가들은 사진집 발간, 갤러리 전시 등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날 사진작가들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을 예술로서 여기고 있는 것이다(Charlotte Cotton, 2007). 결국, 사진작가의 의도가 담긴 예술로서의 사진은 미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며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아카이브를 통해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기록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당대 사회를 생동감있게 보여줄 수 있으며,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정보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유산기관은 사진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기록물은 텍스트 유형의 기록물에 비해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문서류, 간행물류, 일반도서 등과 같은 텍스트 유형의 기록물은 외형에 제목, 생산자 등의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정보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은 부정확하고, 손실된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텍스트 형식의 제목을 완벽하게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이수현, 2016). 사진기록물의 경우 주어진 정보가 피사체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제목과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록으로서의 사진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록으로서의 사진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창작되지 않았으며, 예술적·상업적 가치가 낮기 때문에 생산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사진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으로서 사진은 대부분 출처가 불명확하며 제목과 생산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2.2 사진기록물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작물의 두 가지 요건 중 첫 번째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은 매체에 고정시키는 것과 별개로 타인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요건은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작성은 저작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다른 저작물과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을 때 부여될 수 있다 (이호신, 정경희, 2023 p.37).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 저작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양도나 상속 등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구분되는 권리이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진기록물 또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사진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제6호는 “사진저작물이란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한 저작물도 사진저작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사기와 인쇄기 등에 의해 제작된 것도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정경희, 이호신, 2023, p.43).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보호기간¹⁾이 만료되지 않았으면서 저작권 제한 규정²⁾을 활용할 수 없는 한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2)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5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대부분 공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정경희, 이호신, 2023, p.86)

물론 사진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 중에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도 존재한다. 사진기록물이 사진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촬영된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광고사진의 경우 특정 제품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촬영기술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제품 사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방법만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³⁾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이기 때문에 촬영자가 피사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⁴⁾

판례에서는 광고 목적으로 촬영한 제품 사진 혹은 만인이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을 사진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 또한 단순한 제품 사진이거나 자연경관을 촬영하였다면 창작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기록물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음 판례에서는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앞선 판례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음식 사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촬영한 ‘광어회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는

3)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기존의 판례와 다르게 단순히 피사체인 광어회를 광고 목적으로 충실하게 촬영한 것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⁵⁾ 또한, 원심을 파기하고 목욕을 즐기면서 해운대의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특정 업소의 내부 전경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도 사진저작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유리창을 통해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창작성을 인정한 것이다.⁶⁾ 따라서, 일부 판례에서는 광고 제품 사진을 사진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연경관과 함께 촬영한 업체 내부 사진의 경우 원심에서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종심에서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의 저작물성을 둘러싼 판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의 저작물성을 판단하기란 매우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특정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동일한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이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사진의 저작물성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진아카이브에서도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기 이전에 개별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조차 사진의 저작물성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상황에서 사진아카이브의 실무자가 이를 판단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진기록물이 비록 단순하게 촬영된 사진이거나 창작성이 부재할지라도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사진기록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만한 창작성이 부족할지라도 대부분의 사진기록물을 저작물로 취급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서비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3 사진기록물의 저작권 정보와 권리자불명 저작물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

6)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진기록물의 제호,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등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호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부여한 제목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제호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 때 자신이 정한 제호를 저작물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저작자에 대한 정보는 저작자 명칭과 저작자 생몰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자의 명칭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일차적으로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동일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자 명칭은 알고 있지만,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다면 우선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라고 가정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생몰년은 저작자의 탄생일과 사망일을 의미한다. 저작자의 사망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난 이후라면 해당 저작물은 더이상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야만 추후 지장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는 저작재산권자 명칭과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와 동일인물일 수

도 있지만,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더이상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게 된다. 적법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명칭보다 그의 거소에 해당한다. 거소(居所)란 사람이 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뜻하지만,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거소 정보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메일, 전화번호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정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이유는 결국 저작재산권자에게 연락하는 목적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있기 때문이다.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이용 의사를 알리는 것에 있어 확실한 방법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다. 거주지 정보보다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 의사를 알리고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사진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정보를 통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은 저작권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생산된지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작자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출판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저작권 정보가 부재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정 기록물의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TNA, 2021). 기록물 입수 당시 제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원래 제호에 오류나 혐오 표현이 있을 시 아카이브의 기술담당자에 의해 새로운 제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리고, 저작자에 대한 정보의 경우 기증자나 입수 기관과 같이 입수 출처에 대한 정보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특히 사진기록물은 저작권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진기록물은 텍스트 유형의 기록물과는 달리 외형에서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텍스트 유형의 기록물에는 기본적으로 제목, 저작자, 발행사항 등에 관한 메타데이터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저작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기록물의 경우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오직 사진 속의 피사체에 관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다른 기록물에 비해 어렵다.

또한,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공표⁷⁾”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사진기록물 중 예술 사진작품이나 보도사진의 경우 공표행위가 잘 이루어지며, 공표과정에서 저작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작가는 자신의 사진을 일종의 예술품으로 보고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저작자는 자신의 사진에 제호를 부여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진작가의 작품은 사진집에 수록되고, 갤러리 전시에 활용되고, 경매를 통해 판매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출판, 전시, 경매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작권 정보를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은 미공표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공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Vuopala, 2010).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진기록물은 전문적인 사진작가에 의해 촬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의 모습이나 가족 및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인 경우가 상당수이며(Vuopala, 2010), 저작자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단순히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사진을 전시에 활용하거나, 사진집으로 출판하는 등 공표함으로써 상업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은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7) 「저작권법」 제2조 25호

뿐만 아니라 사진기록물이 미공표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사진아카이브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표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공표 사진기록물의 경우라면 타인이 마음대로 공표할 수 없다. 그런데,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은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공표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미공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까닭에 미공표 사진기록물의 경우 전시에 활용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존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사진기록물의 경우 저작권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불명 저작물이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생산된지 오래되었거나 공표되지 않은 사진기록물의 경우 권리자불명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90~95%라고 밝히고 있다 (Vuopala, 2010).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전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거나, 출판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4 소결

사진기록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당대 사회의 모습을 가장 생동감 넘치게 보여줄 수 있으며, 누구나 작은 사진기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유형의 기록물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진아카이브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사진기록물을 소장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사진기록물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제한 규정을 활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뒤 서비스해야 한다. 물론 이용허락을 받기 이전에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사진아카이브의 실무자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진기록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며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뒤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은

저작권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장 사진기록물이 생산된지 매우 오래되어 저작자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호와 저작자에 대한 변경되어 관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기록물은 다른 유형의 기록물과 다르게 외형에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예술 사진작품의 경우에는 출판, 전시, 경매 등의 공표되는 과정 속에서 저작권 정보가 비교적 관리될 수 있다. 하지만, 사진기록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작권 정보가 비교적 관리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표되지 않은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의 경우 사진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제호와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등의 저작권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진기록물은 권리자불명 저작물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사진아카이브에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사진기록물이 다수 보존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상에 공개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진기록물의 일부만 공개하게 된다면, 귀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문화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 또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Ⅲ.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제한 규정

저작물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권리 부여 방식을 무방식주의라 한다. 무방식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 부여 방식은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오승중, 2020, p.403). 권리 발생을 위해서 아무런 요식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권리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자 일신에게 전속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 등 권리 이전이 가능하다.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면 저작자가 아니라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고아저작물(Orphan Works)’로 부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기에 이를 고아저작물로 명명하였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사용하고 있다(정경희, 이호신, 2023, p.8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용에 대해서는 법정허락이나 저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법정허락과 관련된 제도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사절차, 이용공고, 수수료의

납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공탁해야 한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와 보상금을 사전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해당 조항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대량의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4이다. 세계 각국의 문화시설에서도 권리자불명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의4와 유사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고안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각 규정은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제한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 EU 『권리자불명 저작물 지침』, 이스라엘 『저작권법』 제27A조를 이용 주체, 이용대상 저작물의 공표요건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와 유사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EU,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3.1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4

2020년에 시행된 『저작권법』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문화시설에서 소장하고 있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공개할 수 없었던 문화유산 기관 소장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사항을 『저작권법 시행령』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저작권법』 제35조의4 제1항에서는 이용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로 정하고 있다. 이용 주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

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화시설의 범위는 [표 1]과 같이 크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동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이 있다. 도서관 분야의 문화시설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총 19개 기관에 해당한다.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 총 2개 기관이다. 미술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이다. 따라서 도서관 19개 기관, 박물관 2개 기관, 미술관 1개 기관 등 총 22개 기관이 『저작권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해당한다.

[표 1] 『저작권법』 제35조의4 적용대상

| 기관 유형 | 기관명 | 관련 법 | 기관 수(개) |
|-------|---------------------|----------------------|---------|
|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법』 제19조 | 19 |
| | 광역대표도서관 (17개 기관) | | |
| | 국회도서관 | 『국회법』 제22조 | |
| 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 2 |
| | 국립민속박물관 | | |
|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 1 |

둘째, 동조 동항은 문화시설에 보관된 공표된 저작물(외국인 저작물 제외)을 그 적용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관’되었다는 것은 문화시설이 일정 기간 이상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반드시 문화시설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 혹은 소장자가 관리상의 이유로 문화시설에 위탁 관리를 의뢰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

한 형태로 위탁 보관 중인 저작물도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호신, 정경희, 2020a). 또한, ‘공표’되었다는 것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한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해당 조항은 문화시설에 보관된 저작물 가운데 저작자가 공표한 저작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저작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셋째, 동조 동항은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소장하고 있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공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리를 취할 수 없으며, 오직 비영리 목적으로만 서비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넷째, 동조 동항은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제⁸⁾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⁹⁾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¹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공중송신¹¹⁾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항을 통해 오프라인 환경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공연, 전시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료로 복제한 이후 온라인 환경에서 공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8)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9)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10)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1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다섯째, 동조 동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자 혹은 그의 거소가 파악된다면 해당 저작물은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상당한 조사의 기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4장에서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4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시설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발견할 시 이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문화시설은 이를 수용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에 대한 사항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4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저작재산권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과 이에 준하는 자료와 자신의 성명, 이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4 제3항은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시설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발견할 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청구 시 그 금액은 문화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동조 제4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동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용 형태·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4 제6항은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문화시설은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 전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추후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호신, 정경희, 2020b). 구체적인 사항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다음 네 가지 정보를 문화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첫째,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둘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또는 이명. 셋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넷째, 저작물의 이용방법·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이다.

또한, 동조 동항에 따라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복제방지조치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가 열람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둘째, 이용자가 열람 이외의 방법 혹은 내용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셋째, 각 조치와 관련된 경고문구의 표시. 넷째, 보상금 산정을 위한 조치. 다섯째,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기타 조치 사항까지 수행하였다면 문화시설은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2 EU 『권리자불명 저작물 지침』

EU 회원국의 각 문화유산기관, 교육기관, 공영방송기관은 유럽의 문화유산 자원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Europeana와 같은 유럽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 그러나,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경우 대규모 디지털화와 온라인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럽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EU는 2012년 『권리자불명 저작물 지침』(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공표하며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제부터 해당 지침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지침』 제1조 제1항은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용 주체에 대하여 EU 회원국에 설립되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아카이브, 영화 및 음성 유산 보존기관, 공영방송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공공적 성질을 가지는 자료 보존기관이거나 문화·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다. 그렇지만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기관의 유형만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면 이용 주체가 될 수 있다.

『지침』 제1조 제2항은 이용대상 저작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아카이브, 영화 및 음성 유산 보존기관에서 보관 중인 서적, 학술지, 신문, 잡지 및 그 밖에 문서의 형태로 출판된 저작물이다. 둘째, 이들 기관에서 소장 중인 영상저작물 및 시청각저작물과 음반이다. 셋째,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영방송 사업자가 제작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이다. 시청각저작물은 음과 시각작물이 함께 수록된 영상저작물을 뜻한다. 사진, 삽화, 예술품 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각저작물의 경우 대상 저작물이 아니며, 도서 혹은 간행물에 수록된 시각저작물만 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즉, 대상 저작물이 도서 및 간행물이라면 출판이라는 공표행위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만,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침』 제6조 제1항은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방법을 공익적 사명을 위한 복제와 인터넷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 제6조 제2항은 이용목적은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없으나, 디지털화나 인터넷 공개를 위해 소모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도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침』 제3조 제1항은 이용대상 저작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저작물 이용 전에 성실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 제3조 제2항은 성실한 조사를 위해 조회해야 할 정보조회처는 EU 각 회원국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적어도 『지침』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조회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침』 부칙에서는 성실한 조사를 위한 정보조회처를 나열하고 있으며, [표 2]와 같다.

첫째, 출판 도서라면 1) 납본 정보나 도서관 목록 혹은 전거 파일, 2) 출판사 혹은 저작자협회, 3) 기존 저작권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WATCH(작가, 예술가, 저작권보유자 정보), ISBN 데이터베이스, 4) 도서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5)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s)와 함께 ARROW(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를 포함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와 등록부를 포함한 정보조회처를 조사해야 한다.

둘째, 신문, 잡지, 학술지, 연속간행물이라면 1) ISSN, 2) 도서관 색인과 카탈로그, 3) 납본, 4) 각국의 출판사협회나 저작자협회, 5) 해당 저작물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조회처를 조사해야 한다.

셋째, 서적, 학술지, 잡지, 신문, 정기 간행물 및 그 밖에 다른 저작물에 수록되어 있는 시각저작물(미술, 사진, 삽화, 디자인, 건축물 및 도안)의 경우 1) 앞선 언급한 모든 출처와 함께 2) 시각예술 관련 집중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 3) 사진 대행사¹²⁾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조회처를 조사해야 한다.

넷째,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이라면 1) 법적 납본, 2) 각국의 저작자협회, 3) 영화 및 음성 유산 보존 기관과 국립도서관들의 데이터베이스, 4)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국제표준시청각번호(ISAN), 음악 작품의 경우 국제표준음악작품코드(ISWC), 음반의 경우 국제표준음반코드(ISRC), 5) 저작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나 시청각저작물 제작자 협회와 같은 관련 집중관리단체, 6) 해당 저작물에 적혀 있는 정보, 7) 그 밖의 특정 분야의 권리자들을 대표하는 관련

12) 사진작가나 사진가들의 작품을 대행하여 판매하거나 배급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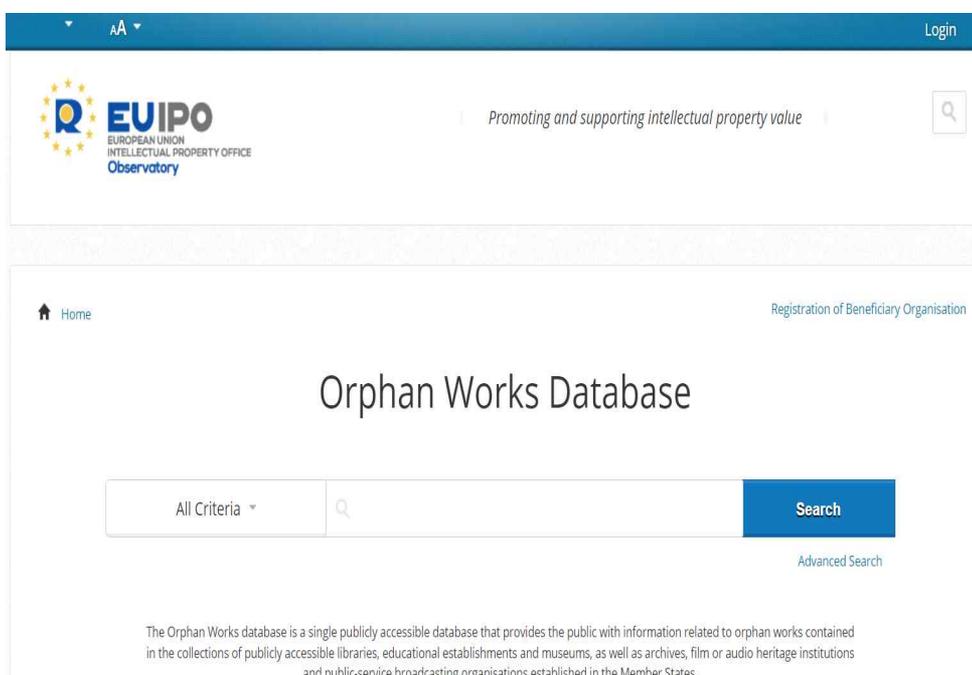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조회처를 조사해야 한다.

[표 2] EU 『지침』 저작물 유형별 정보조회처

| 저작물 유형 | 정보조회처 |
|-----------------------|--|
| 1) 출판 도서 | 납본 정보, 도서관 목록, 전자파일 |
| | 출판소, 저작자 협회 |
| | 저작권 관련 DB, WATCH, ISBN DB |
| | 도서 관련 집중관리단체 DB |
| | VIAF, ARROW를 포함한 복수의 DB와 등록부 등 |
| 2) 간행물 | 간행물 관련 ISSN |
| | 도서관의 색인과 카탈로그 |
| | 납본 정보 |
| | 각국의 출판사 협회나 저작자 협회 |
| | 해당 저작물 관련 집중관리단체 DB 등 |
| 3) 출판 도서 등에 수록된 시각저작물 | 1)출판도서와 2)간행물에서 언급된 모든 정보조회처 |
| | 시각예술관련 집중관리단체의 DB |
| | 사진 대행사의 DB |
| 4)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 | 법적 납본 |
| | 각국의 시청각저작물 관련 저작자 협회 |
| | 영화 및 음성 유산 보존 기관과 국립도서관 DB |
| |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ISAN, 음악 작품의 경우 ISWC, 음반의 경우 ISRC |
| | 저작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나 시청각저작물 제작자 협회 관련 집중관리단체 DB |
| | 해당 저작물에 수록된 정보 |
| | 특정 분야의 관리자를 대표하는 관련 단체의 DB |

『지침』 제3조 제5항은 성실한 조사를 수행한 뒤 그 결과와 함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관할 국가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실한 조사에 따라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간주한다는 내용, 『지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내용, 저작물의 지위 종결에 관련된 내용, 이용기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지침』 제3조 제6항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EUIPO 사무국이 제작, 관리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Orphan Works Database(이하, 권리자불명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



[그림 1] EUIPO 권리자불명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Orphan Works Database, 2024)

성실한 조사 이후 권리자불명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까지 하였다면 해당 저작물은 전 회원국에서 이용과 접근이 허용된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 시 『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성실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침』 제6조 제5항은 이용게시 이후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중지해야 하며,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의 범위는 회원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3.3 이스라엘 『저작권법』 제27A조

2019년 이스라엘은 『저작권법』 (חוק זכות יוצרים, תשס"ח-2007)을 개정하며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 관련 조항으로 제27A조를 시행하였다. 해당 조항의 경우 문화시설에서의 대량의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와 EU 『지침』과 다르게 더 완화된 조건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arid Eden, Ben-Zvi Omri, 2022).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저작권법』 제27A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이스라엘 『저작권법』 제27A조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대한 이용 주체는 본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특정 유형의 기관에만 적용 가능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내 모든 주체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기관이 이용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교육기관, 공영방송사, 영리 민간기관, 심지어는 개인까지도 이용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이용대상 저작물의 요건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드시 저작물을 소장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미공표저작물 또한 이용대상에 해당한다.

동조 제2항은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이 영리적 이용의 경우 해당 저작물 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리적 이용의 경우라면 이용자는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 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에 이용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제27A조 제2항 제1호).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지정된 웹사이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할 수도 있다(Sarid Eden, Ben-Zvi Omri, 2022). 그러나 비영리적 이용일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

동조 제3항은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을 위해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성격과 창작일 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유형이나 특성, 가치에 따라 조사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기록물의 제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조사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다(Sarid Eden, Ben-Zvi Omri, 2022). 다만, 동조 제4항은 해당 법에서는 관련 부서의 장관이 이스라엘의 합리적인 조사의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동조 동항은 영리적 이용의 경우라면 이용자는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때 이용자는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며, 보상금 지불은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라면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났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에서의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Sarid Eden, Ben-Zvi Omri, 2022)

3.4 소결

권리자불명 저작물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문화유산기관이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와 EU,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제에 저작권 제한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에 앞서서 저작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조금씩 상이하다. [표 3]은 우리와 유사한 저작권 제한의 방식으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국의 법률의 요건을 이용 주체와 이용대상 저작물의 공표요건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표 3] 저작권 제한 규정 이용 주체와 대상 저작물의 공표요건 비교

| 국가 \ 요건 | 이용 주체 | | | | 이용대상 저작물의 공표요건 |
|---------|-------|---------|--------|-----|----------------|
| | 개인 | 기관 및 단체 | | | |
| | | 구체적 지정 | 포괄적 지정 | 미지정 | |
| 한국 | X | O | X | X | O |
| EU | X | X | O | X | △ |
| 이스라엘 | O | X | X | O | X |

첫째,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는 EU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 적용 주체가 상당히 협소하다. EU 『지침』의 경우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이용 주체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저작권법』 제27A조의 경우에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영리기관 및 개인까지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시설이 이용 주체에 해당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그 적용대상을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배제되어 있다. 이는 EU 『지침』이 기록물관리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로 인해 기록물관리기관에 소장된 상당수의 권리자불명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서비스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배제된 이유는 우리 법령이 기록물관리기관을 문화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까닭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단, 『저작권법』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 준용해야 한다.

문화시설에 관한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학관,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시설 대한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공연장·영화상영관·야외 음악당 등의 공연시설, 박물관·미술관·작품 전시 및 매매 시설, 조각공원 등의 전시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등의 도서시설, 문화의 집·문화체육센터·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지역문화활동시설, 지방문화원·국악원·전수회관 등의 문화 보급 전수시설, 모든 시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종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배제되어 있다. 애당초 기록물관리기관을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이용 주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물관리기관은 단순히 저작물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시, 온라인 콘텐츠 구축,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는 그 적용 범위를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하고 있다. EU의 경우 대상 저작물이 시청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이

라면 미공표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4는 저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공표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이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는 오직 저작자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공표권의 예외조항을 활용한다면 공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은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문화시설에 미술저작물등을 양도한 경우라면 미공표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권리자불명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원본 전시에 의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은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을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기증에 의한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등이란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뜻한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기관, 주민센터 자료실 등 비영리 목적의 기관이 설치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시설이라면 모두 ‘도서관등’에 속한다. 따라서 저작자가 문화시설에 미공표 기증한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불명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즉,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을 문화시설에 원본 미술저작물등을 양도하여 원본 전시에 의해 공표했을 경우, 미공표저작물을 기증한 경우에는 공표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불명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표권 예외조항을 마련한 이유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적 배려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록물관리기관의 특성상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대한 면책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데 적용됨으로써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정경희, 이호신, p.62). 다만, 공표권 예외조항은 저작자가 직접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양도하거나 이를 기증했을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입수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이나 기증자가 저작자와 동일인물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표권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Ⅳ. 사진기록물의 상당한 조사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 『저작권법』 제35조의4는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이다. 본 조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우리 법의 상당한 조사의 절차를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4.1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 상당한 조사의 기준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통해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용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기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저작재산권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타인에게 양도, 상속 등 경제적인 거래가 가능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으며, 출판 등의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상당한 조사에서는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시설에서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저작자의 명칭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우선 저작자가 저작

재산권자라는 가정하에 상당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 저작재산권자와 연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더라도 연락처와 같은 거소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저작재산권자에게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다. 상당한 조사를 통해 저작재산권자의 명칭은 파악할 수 있더라도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면 여전히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상당한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할 사항은 저작재산권자의 거소에 관한 정보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상당한 조사는 1호부터 8호까지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된 정보조회처에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정보조회처의 성격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첫째, 문화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1호). 이때 ‘문화시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란 자료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저작물을 입수하였을 때 행정처리를 위해 작성한 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각 문화시설은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 및 DB 등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부여하여 다양한 소장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저작물의 이용에 앞서서 문화시설이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2호).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에 관한 정보,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에 관한 정보,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한다면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보상금수령단체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정보조회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3호). 보상금수령단체는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음반 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목적의 경우 한국연예저작자협회가,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목적의 경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보상금수령단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학교교육목적 등이나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복제 등의 경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보상금수령단체에 해당한다. 이들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의 분배를 위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조회처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수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오승종, 2020). 조회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신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이라면, 해당 신탁관리단체 자체가 저작재산권자이고, 홈페이지 자체가 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문 저작물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음악 분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인협회가, 영화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가, 방송 부문은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뉴스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해당한다.

넷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4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검색 및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저작재산권자 조회 공고, 법정허락을 통해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저작권위탁관리업 보고에 의해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저작재산권자의 명칭과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섯째, 도서관 자료 및 국가 서지를 조회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5호). 도서관 자료 및 국가 서지에 관한 정보는 전국 2,000여 개 공공·전문도서관과 정부부처 자료실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통합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을 조회할 수 있다.

여섯째, 콘텐츠 식별체계를 조회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6호). 우리나라의 콘텐츠 식별체계란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로써 콘텐츠에 부여하는 유일하고 영구한 국가표준식별체계로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표준식별체계에서는 콘텐츠에 UCI 식별자를 부여하여 데이터 정보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하고 있다(UCI, 2024).

일곱째,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7호). 이는 특정 정보조회처로 제한하여 검색하는 것이 아닌 여러 출처로 구성된 정보조회처를 총망라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찾고자하는 검색 결과가 조회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의 정확한 사이트명을 명시하지 않으며, 어떤 키워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검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여덟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작자정보관리단체를 조회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작자정보관리단체는 저작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제목 및 저자 명칭 등을 검색하여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게끔 하고 있다.

먼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학술저작물이라면,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Korea Citation Index)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조회하여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의 소속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기관 모두 학술지 정보, 논문 등의 학술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사진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미술은행을 조회하여 저작재산권자나 해당 작품의 소장

처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은 미술시장에 대한 분석 정보, 통계 서비스, 경매결과 정보 등의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2024).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대중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정보조회처 모두 예술성이 강한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영화저작물이라면 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저작권자나 제작사 혹은 감독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는 주로 한국 영화 작품과 관련된 인물, 이미지, 기사, 평론, 각본, 도서, 포스터, 논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극저작물 및 이와 관련된 영상저작물이라면, 국악아카이브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조회하여 저작권자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국악아카이브는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및 창작 국악에 이르는 국악 자원을 조사·수집·관리·보존하는 기관으로 주로 국악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는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4.2 정보조회처 검색 항목 및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조사

사진아카이브에서 사진기록물의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표 4]와 같은 정보조회처별 홈페이지를 조회해야 한다. 해당 정보조회처에서 정하고 있는 검색 항목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진기록물의 저작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보조회처에서 검색 항목으로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저작권자와 관련되어 어떤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검색 항목을 살펴보는 이유는 정보조회처에서 정하고 있는 검색 항목을 바탕으로 저작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보조회처에서 제호를 검색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제호를 검색

함으로써 상당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 상당한 조사를 통해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조회처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사진저작물에 관한 상당한 조사에 있어 각 정보조회처의 특징과 정보조회처별 검색 항목과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 문화시설의 자료(1호)와 국내외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7호)는 별도로 지정된 정보조회처 홈페이지는 부재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4] 사진기록물의 상당한 조사 정보조회처

| 호 | 정보조회처 | 정보조회처 홈페이지 명칭 |
|----|--------------------------------|-----------------------------|
| 1호 | 문화시설의 자료 | - |
| 2호 | 저작권등록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부 |
| 3호 | 보상금수령단체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KOLAA IMAGE |
| 4호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
| 5호 | 도서관 자료 및 국가 서지 | 국가자료종합목록 |
| 6호 | 콘텐츠 식별체계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UCI |
| 7호 | 국내외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 | - |
| 8호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작자정보관리단체 |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
| |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부는 등록자인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이름과 거소정보를 함께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작자,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검색 항목을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사진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회원 들어가기 | 회원가입 | 회원크기 100

등록안내 | 등록신청 | 등록검색 | 고객센터 | 나의저작권

등록검색

등록정보

SW 연구개발 연구성과물

등록공보

등록 현황

등록정보 검색

| | |
|-------|------------------------------------|
| 등록번호 | C-2024-016415 |
| 등록일자 | 2024-05-07 |
| 등록부문 | 일반저작물 저작권 등록 (저작자성명, 창작연월일) |
| 제호 | 바다와 카르닉 기방을 데고 있는 사진 |
| 종류 | 사진저작물 |
| 저작자 | 주식회사 신세계코리아 |
| 등록원인 | 저작자 : 주식회사 신세계코리아, 창작 : 2024.03.20 |
|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신세계코리아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1길 |

목록

[그림 2] 저작권등록부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등록정보 검색

검색구분 등록정보 등록 공공저작물정보

간편검색

• 등록번호, 저작자명(성명/법인명), 제호(저작물명) 중 입력
예) C-2020-001138, 한국교육방송공사, 펍수

(Tip!) 띄어쓰기, 영문 대소문자 구분없이 검색 가능

검색

[그림 3] 저작권등록부 검색 항목(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둘째, 사진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다.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정보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제공하는 KOLAA IMAGE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등과 같은 예술가 단체들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신탁관리를 의뢰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KOLAA IMAGE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이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가 이미 파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작자,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검색 항목을 살펴본 결과, [그림 5]와 같이 사진저작물의 조회를 위해 이 미지명, 저작자명, 키워드명을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할머니2

| | |
|-------|---|
| 작가 | 심효섭 (ISNI : 0000000478757409) |
| 이미지코드 | 28643 |
| 대분류 | 사람 |
| 중분류 | 기타 |
| 소분류 | 기타 |
| 키워드 | |
| 창작년도 | 2007년 |
| 크기 | |
| UCI | I502:A+REG-0000032369 표준유형별보기 |
| DOI | 10.22652/KORRAIMAGE.28643 |

장바구니에 담기

저작물 이용 신청

신청자(*)

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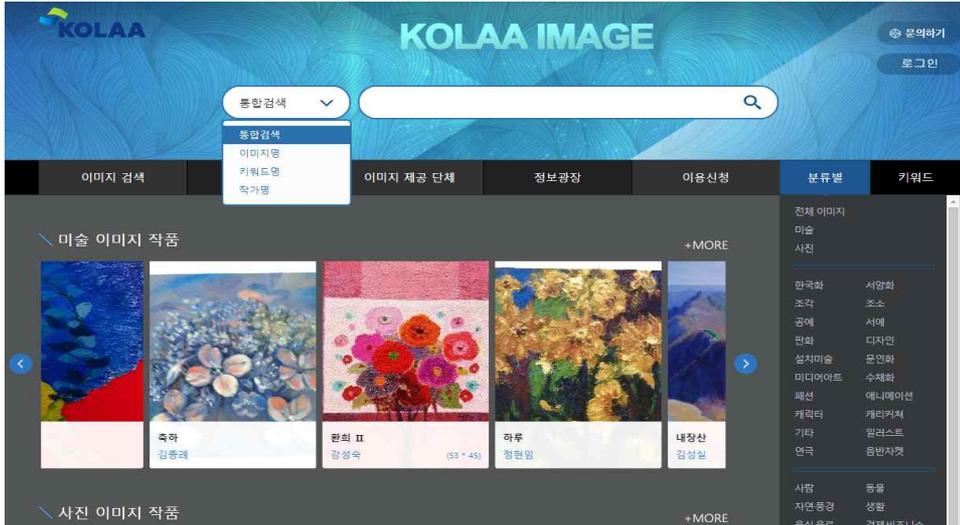
전화번호(*)

이용방법

30219

※인물 사진은 초상권에 대해 별도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절차 및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 통보는 신청일 기준 최소 4주 이내로 소요되며,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저작물 이용신청내역 및 결과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그림 4] KOLAA IMAGE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KOLAA IMAGE, 2024)



[그림 5] KOLAA IMAGE 검색 항목(KOLAA IMAGE, 2024)

셋째,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그림 6]과 같이 살펴본 결과, 저작권위탁관리업무보고 등에 의해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명칭과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도 함께 조회된다는 점에서 저작자,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일부분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검색 항목을 살펴본 결과 [그림 7]과 같이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명을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그림 6]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분야별 권리자 찾기

전체 음악 어문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2차저작물 방송 실연 음반 데이터베이스 기타

추가유형 전체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저작권등록

검색어

선택 검색어 입력

선택
사진 저작물명

입력초기화 검색

[그림 7]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검색 항목(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넷째, 국가자료종합목록의 전국 도서관 자료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그림 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저작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색 항목을 살펴본 결과, [그림 9]와 같이 사진저작물의 제 목, 저자, 주제를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Network KOLIS-NET 국가자료종합목록

서비스 소개 공지사항 이용안내

전국 도서관 자료 통합검색 서비스

전체 사진

전체 일반도서 잡지/학술지 학위논문 멀티미디어/비도서 디지털신문 다룬기

전체 일반도서 잡지/학술지 학위논문 멀티미디어

예술 사진

| | |
|-------|-------------------|
| 표제/저자 | 사진 / 김승일 |
| 발행사항 | RIAK [배포] , 2018 |
| 분류기호 | 한국심진분류법 : 673.511 |
| 언어 | Korean |
| 저작번호 | UW20196350500 |

특정판찾기

사진 : 2nd album / 김승일

검색 결과 제한

- 자료유형
 - 전체 (60634)
 - 일반도서 (18924)
 - 잡지/학술지 (188)
 - 학위논문 (2537)
 - 디지털신문 (38101)
 - 멀티미디어/비도서 (984)
 - 전자자료 (355)
 - 지도자료 (40)
 - 악보/녹음자료 (134)
 - 시청각자료 (455)
- 발행시기

[그림 8] 국가자료종합목록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국가자료종합목록, 2024)



[그림 9] 국가자료종합목록 검색 항목 (국가자료종합목록, 2024)

다섯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국가표준식별체계 UCI의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그림 10]과 같이 살펴본 결과, 기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여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저작자로 볼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색 항목을 살펴본 결과, [그림 11]과 같이 사진저작물의 제목, 내용, 기여자를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 전체 (570,417건) | 문서 (0건) | 이미지 (570,417건) | 영상 (0건) | 음원 (0건) | 기타 (0건) |
|---|------------|-------------------|------------|------------|---|
| <p>UCI 제목: 현대자동차그룹, 소방관 회복지원 수습전기버스 전달식 UCI 코드: I011-M009134426 기여자 정보: 뉴스스 우창호 등록일: 2024-06-27 파일형태: 디지털 파일형식: 이미지 자원유형: Joint Picture Experts Group</p> | | | | | |
| | | | | | 표준유형별보기 UCI코드복사 선택 <input type="text"/> 보기 |
| <p>UCI 제목: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서 발언하는 조원일 경산시장 UCI 코드: I011-M009134207 기여자 정보: 뉴스스 정창오 등록일: 2024-06-27 파일형태: 디지털 파일형식: 이미지 자원유형: Joint Picture Experts Group</p> | | | | | |
| | | | | | 표준유형별보기 UCI코드복사 선택 <input type="text"/> 보기 |
| <p>UCI 제목: 조원일 경산시장,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참석 UCI 코드: I011-M009134220 기여자 정보: 뉴스스 정창오 등록일: 2024-06-27 파일형태: 디지털 파일형식: 이미지 자원유형: Joint Picture Experts Group</p> | | | | | |
| | | | | | 표준유형별보기 UCI코드복사 선택 <input type="text"/> 보기 |

[그림 10] UCI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2024)

통합검색(분야별)

기본검색 상세검색

UCI 기본검색
 ※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음악, 학위논문 등)의 정보 및 UCI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실 수 있는 통합검색 서비스입니다.

정렬방식선택 최신날짜순 과거날짜순

조회결과 개수 10 개씩 화면에 보기

검색정보입력 검색정보입력

[그림 11] UCI 검색 항목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2024)

여섯째, 사진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에 정보 관리 단체로서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미술은행에서 사진기록물의 저작권자산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먼저,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그림 12]와 같이 살펴본 결과, 저작자에 대한 정보는 일부분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권자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색 항목을 살펴본 결과, [그림 13]과 같이 저작물의 제목, 내용을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색을 수행해본 결과 저작자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12]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2024)

통합검색

검색어 입력

정렬 검색범위 기간 2019-01-0

검색어 ""에 대한 검색결과 총 건입니다.

| | | | | |
|--------|------|------|-------|------|
| 전체 (0) | 경매 0 | 작품 0 | 자료실 0 | 소식 0 |
|--------|------|------|-------|------|

[그림 13]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검색 항목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2024)

다음으로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의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림 14]와 같이 해당 정보조회처에서 저작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색제공 항목을 직접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지만, 직접 검색을 수행해본 결과 제목, 저작자 명칭,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시자료

- 바다사진관 : 김보섭 사진
 - 작가명 김보섭
 - 전시장소 중앙문화예술회관(인성), 인사아트센터 (미주동, 3층)
 - 전시기간 2006.03.17 ~ 2006.04.04



구성 및 개요

- 인성 전시: 2006.03.17~2006.03.24 중앙문화예술회관 미주동
서울 전시: 2006.03.29~2006.04.04 인사아트센터 3층
 - 김보섭의 초대품
 - 후원엽서
 - 주요작품 이미지(축택)

이미지

전체 2개 표지 1개 등록됨



[그림 14]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2024)

이상 상당한 조사의 절차와 이에 따른 정보조회처별 검색 항목,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각 정보조회처에서 정하고 있는 검색 항목 [표 5]와 같이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제호와 저작자명, 키워드를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는 문화시설 보관 자료(제1호)와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제7호)를 제외한 8개의 정보조회처의 경우 제호를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제외한 7개 정보조회처는 모두 저작자명을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7개 정보조회처 중에 저작권등록부를 제외한 6개 정보조회처는 키워드를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보조회처에서 제호, 저작자명, 키워드를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검색함으로써 상당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표 5] 상당한 조사 정보조회처별 검색 항목

| 정보조회처 | | 검색 항목 | | |
|----------------------------|-----------------|-------|------|-----|
| | | 제호 | 저작자명 | 키워드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부 | | ○ | ○ | X |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IMAGE | | ○ |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 | ○ | X | X |
| 국가자료종합목록 | | ○ | ○ | ○ |
|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 | ○ | ○ | ○ |
| 창작자 정보 관리 단체 |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 ○ | ○ | ○ |
| |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 | ○ | ○ | ○ |
| | 미술은행 | ○ | ○ | ○ |

둘째, 각 정보조회처의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는 문화시설 보관 자료(제1호)와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제7호)를 제외한 8개의 정보조회처 중에서 저작자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권등록부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IMAGE,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만이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경우 일부 저작물에 한해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경우도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보조회처에서 저작자 명칭을 제공하고 있지만, 5개 정보조회처에서 저작재산권자와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6] 상당한 조사 정보조회처별 저작권 정보 제공 현황

| 정보조회처 | | 저작권 정보 | | |
|----------------------------|-----------------|--------|--------|-----------------|
| | | 저작자 | 저작재산권자 | 저작재산권자 거소 정보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부 | | ○ | ○ | ○ |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IMAGE | | ○ |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 | △ | △ | △ |
| 국가자료종합목록 | | ○ | X | X |
|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 | ○ | X | X |
| 창작자 정보 관리 단체 |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 △ | X | X |
| |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 | ○ | X | X |
| | 미술은행 | ○ | X | X |

셋째, 상당한 조사에 따른 정보조회처는 대부분 예술작품과 관련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호에 따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나 제8호에 따른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미술은행과 같은 정보조회처는 모두 예술과 관련된 곳으로, 미술작품이나 예술성이 강한 사진저작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4.3 소결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상당한 조사의 절차를 사진기록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당한 조사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조회처별 홈페이지를 조회하여 저작권 정보 제공 및 검색 항목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상당한 조사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정보조회처에서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상당한 조사는 결국 정보조회처에서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당한 조사의 목적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한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저작재산권자의 연락처와 같은 거소 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정보조회처에서 저작물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저작자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의 정보조회처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 정보의 경우 저작권등록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IMAGE,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에서만 제공하고 있었다. 문화시설에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5호에서 제8호까지 해당하는 6개 정보조회처의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진아카이브에서 사진기록물에 관한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상당수의 정보조회처에서 저작재산권자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5호부터 8호까지 해당하는 정보조회처에서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조회처까지 모두 조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파악하는 것과 연관이 없는 정보조회처까지 조회하는 것은 오히려 사진 아카이브 담당자의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제호나 저작자명 등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검색을 통해 사진기록물의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상당한 조사에 따른 각 정보조회처의 경우 저작물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제호나 저작자, 키워드 등을 검색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기록물에서 특정 키워드를 추출하고 검색하여 그에 부합하는 특정 사진을 조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제호와 저작자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진기록물의 경우 정보조회처에서 요구하는 검색 항목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특히, 각 정보조회처에서 키워드, 제목, 저작자명을 각기 다르게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검색어를 파악하여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키워드 위주의 검색 대신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상당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상당한 조사에서 정하는 정보조회처에는 사진기록물과 관련된 기관이 부재하다. 상당한 조사에서 요구하는 정보조회처는 주로 예술기관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예술작품으로 제작된 사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사진아카이브를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이 수집하여 보존하는 사진은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의 경우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예술작품과 관련된 정보조회처에서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V. 논의 및 제안

5.1 문제점

오늘날 사진아카이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사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기록물은 상당수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사진의 저작물성을 사진아카이브의 실무자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뒤에 서비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진기록물은 저작권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불명 저작물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사진아카이브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사진아카이브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다음에서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1.1 기록물관리기관 배제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22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하여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 배제되어 있다. 실제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아카이브는 국회도서관에 소속된 국회기록보존소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아카이브에 해당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관리기관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봤을 때 EU의 경우 문화시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이용 주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또한 모든 문화시설을 이용 주체의 범

위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기록물관리기관을 배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다.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진이 가진 기록으로서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며 기록물관리기관, 도서관, 문화원, 박물관, 민간기관 등 우리 사회 전반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에서도 사진아카이브를 통해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사진기록물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당대 사회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담고 있고, 누구든지 기록하기가 용이하며 정보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수요도가 높은 기록물이다. 이러한 까닭에 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기관이 사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문화시설만으로 제한한 것은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소장하며 이를 서비스하길 희망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문화시설만이 아니다. 문화시설의 범위에 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하여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기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1.2 미공표 사진기록물 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35조의4는 공표된 저작물만 이용대상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공표권은 오직 저작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공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무단으로 공표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미공표 사진기록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해당 조항과 유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공표저작물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저작권법』 제27A조의 경우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의4는 저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한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는 미공표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공표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예술 사진작품이나 보도사진의 경우에는 비교적 공표행위가 잘 이루어지지만, 사진기록물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모습이나 인간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기에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미공표 사진기록물은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미공표 사진기록물의 경우 공표권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공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진기록물이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저작자가 이를 사진아카이브에 양도하였다면 원본 전시에 의해 공표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진아카이브에 사진기록물을 기증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공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표권 예외조항을 활용한다면 미공표 사진기록물 또한 권리자불명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표권 예외조항은 저작자가 직접 사진기록물의 원본을 양도하거나 기증했을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증자가 저작자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진기록물의 경우 공표권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진기록물은 외형에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증자가 저작자와 동일인물인지 파악할 수 없어 공표권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자를 파악할 수 없거나, 기증자가 저작자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사진기록물은 공표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까닭에 공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의 경우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포함하여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진아카이브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미공표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지역, 풍경, 일상

생활 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가치가 높다. 사진기록물이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본 조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1.3 『저작권법』 제16조의3 상당한 조사의 기준 문제

5.1.3.1 정보조회처 선정의 문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지정된 10개 정보조회처를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기록물의 상당한 조사와 관련된 10개 정보조회처 중 상당수의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당한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의 명칭보다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거소 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조회처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5호에서 8호까지에 해당하는 6개 정보조회처의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저작재산권자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조회처를 조회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만, 이들 정보조회처까지 모두 조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자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조회처까지 조회하는 것은 오히려 사진아카이브 담당자의 부담을 초래할 뿐이다.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까지 조회하게 하는 이유는 『저작권법』 제35조의4가 EU 『지침』 모델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EU에서 발표한 『지침』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성실한 조사를 위해 조회해야 할 정보조회처가 너무 많거나, 온라인상에서 정보조회처 DB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

에 원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성실한 조사가 저작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실효성이 없으며, 담당자들이 성실한 조사에 부담을 느껴 『지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Jennifer McGuinn 외, 2021).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상당한 조사 또한 EU 성실한 조사를 모델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하고 있지만, 이런 까닭에 상당수의 정보조회처가 저작권자의 거소를 파악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한계를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둘째, 상당한 조사에서 정하는 정보조회처에는 사진기록물과 관련된 기관이 부재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와 제8호에 해당하는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미술은행 모두 예술품과 관련된 기관이며, 소장하고 있는 사진 또한 대부분 예술 사진작품에 해당한다. 반면에, 사진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은 대부분 사진기록물에 해당하며, 상당수가 예술작품이 아닌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사진이다. 사진기록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기관 등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당한 조사에서 정하는 상당수의 정보조회처가 예술작품과 관련된 기관이다.

사진은 예술작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술 사진작품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예술기관을 조회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이 예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은 아니며,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지역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기록물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진기록물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기관에서 사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사진기록물의 저작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진기록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상당한 조사에서는 예술과 관련된 기관만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기관을 조회하더라도 사진기록물의 저작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5.1.3.2 텍스트 기반 검색의 문제

제호와 저작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진기록물은 상당한 조사를 수행할 수가 없다. 사진기록물에 관한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보조회처에서 제호와 저작자명 등 텍스트 기반의 검색을 통해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는 제호나 저작자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진기록물은 외형에 저작권 정보가 부재하다. 외형에 제호와 저작자 명칭이 드러나는 텍스트 유형의 기록물과 달리 사진기록물은 외형에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호와 저작자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상업적 가치도 낮기 때문에 사진집이나 전시, 경매 등을 통해 공표되지 않아 저작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진아카이브에서 사진기록물을 수집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담당자에 의해 제호나 저작자명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작권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지정된 정보조회처에서 텍스트 기반의 검색을 통해 특정 사진기록물을 조회하려고 해도 제호와 저작자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검색 자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의 제호나 저작자명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텍스트 기반의 검색 대신 다른 방식으로 검색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5.2 개선방안

앞서 5.1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문제점은 이용 주체의 범위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 미공표 사진기록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저작재산권자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기록으로서 사진과 관련되지 않은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 저작권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진기록물의 경우 텍스트 기반의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있었다. 따라서, 사진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더라

도 상당수의 경우 해당 조항을 통해 서비스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시설의 범위 확대, 둘째, 미공표 사진기록물의 이용, 셋째, 정보조회처 재선정, 넷째, 이미지 기반 검색 마련이다.

5.2.1 문화시설의 범위 확대

『저작권법』 제35조의4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한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날 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사진기록물을 수집하며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한다. 사진기록물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의4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 22개 기관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하여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하여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속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5.2.2 미공표 사진기록물의 이용

미공표 사진기록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일 경우 저작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사진기록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사망했다면 공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사진기록물의 경우 저작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진기록물은 상업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사진아카이브에서의 사진기록물의 이용목적 또한 비영리적이라는 점에

서 미공표 사진기록물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이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저작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미공표저작물도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2.3 『저작권법』 제16조의3 상당한 조사의 기준 개정

5.2.3.1 정보조회처 재선정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와 거소 정보까지 제공하는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하되, 사진기록물과 관련된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먼저, 정보조회처 중 상당수의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보조회처를 조회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처와 같은 거소를 파악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정보조회처는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는 오히려 사진아카이브 담당자의 부담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사진기록물과 관련된 기관 대신에 예술기관만 정보조회처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기관을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상당한 조사에는 사진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조회처로 선정된 것이 아닌, 예술 사진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만 정보조회처로 선정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사진아카이브에서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명칭이나 저작재산권자의 명칭까지만 제공하는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하는 것보다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사진기록물과 관련되어 이를 다수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록원, 사진 관련 아카이브, 박물관, 언론사 등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5.2.3.2 이미지 기반 검색 구축

상당한 조사에 있어 이미지 기반의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의 경우 제호와 저작자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의 검색을 통해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주어진 정보가 이미지밖에 없는 사진기록물은 이미지로 검색하는 것이 적합하다. 대표적으로 구글 이미지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지로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미지 개체에 대한 검색결과, 유사 이미지, 해당 이미지 또는 이와 유사한 이미지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조회할 수 있다(Google Search Help, 2024). 또한, 이미지 검색 기능을 통해 사진이 촬영된 시간 및 장소, 사진의 저작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Google News Initiative, 2024).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 소장 사진기록물의 경우 제호나 저작자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이미지 기반의 검색을 통해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VII. 결론

본 연구는 사진아카이브에 소장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하여 사진아카이브가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진기록물의 특성을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아울러 문화시설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규정을 EU와 이스라엘의 유사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절차를 사진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관련 시행령의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특히 사진아카이브를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이 배제되었다. 둘째, 해당 조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함으로써, 미공표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공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사진기록물을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이용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상당한 조사’의 과정 가운데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조회처가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는 없으면서 문화시설의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조회처의 대부분은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곳이다. 또한, 예술 사진작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술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조회처를 통해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넷째, 사진기록물 가운데 상당수는 제호와 저작자명을 통해서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해외 사례와 같이

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 중 대부분이 미공표 저작물이거나 공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미공표 저작물이 해당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제35조의4와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범위를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사진기록물의 정보조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박물관을 정보조회처에 포함할 것을 함께 제안하였다. 넷째,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의 경우 제호와 저작자명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조사에 제호나 저작자명 등의 텍스트 기반 검색 대신에 사진 자체에 대한 이미지 기반의 검색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진아카이브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해서 권리자불명 저작물, 특히 사진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실제 기록물의 특성에 기반하여 권리자불명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룬 첫 사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개별 사례에 대한 풍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한 이유는 상당수의 문화시설에서 소장 기록물의 저작권 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문화시설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기증자와 저작재산권자 동일인이라는 가정하에 저작권 양도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도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시설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잘못된 저작권 처리 방식과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외 사례로서 TNA(2021)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서비스에 관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SAA(2009)의 경우 권리자불명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별도의 선언문까지 발표하고 있다. 국외 기록학 분야의 이러한 행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후속 연구와 논의가 이어져 사진아카이브를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이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수진, 신동희. (201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기록학연구, 0(49), 5-49.
- 김소영. (2005). 사진기록물에 대한 기록학적 이론정립을 위한 첫 번째 시도: 사진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록보존, 18, 163-190.
- 김소영. (2010). 대학기록관 사진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 김철권. (1998). 기록으로서의 사진과 예술로서의 사진. 중부대학교 논문집, (11), 369~381.
- 박소연. (2016). 고아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을 위한 상당한 노력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 배은경, 박주석. (2009). 사진기록의 평가기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79-102.
- 뷰먼트 뉴홀. (1998). 사진의 역사. 서울: 悅話堂.
- 샬럿 코튼. (2007). 현대예술로서의 사진. 서울: 시공사.
- 양소현. (2018). 시각예술기록의 활용과 저작권 문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오승중. (2020).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유경선, 박재건, 최군성, 이종옥, 박주석, 박용한, 강종진, 윤건혁, 양중훈, 이동준. (1995). 사진용어사전. 서울: 미진사.
- 이수현. (2016). 미기술(未記述) 사진기록물의 기술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과 적용.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이지은, 김지현. (2023). 미술 아카이브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1-20.
- 이호신. (2013). 공연예술기록의 저작권 문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249-268.

- 이호신, 정경희. (2020a). 기록관리기관은 문화유산기관인가 저작권법의 고아 저작물 예외규정에서 기록관리기관 배제 문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169-184.
- 이호신, 정경희. (2020b). 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작물 디지털 서비스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 정보관리학회지, 37(3), 107-131.
- 장 퉁 다발, 박주석 옮김. (1999). 사진예술의 역사. 서울: 미진사.
- 정경희. (2014). 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93-214.
- 정경희, 이호신. (2023).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파주: 한울아카데미.
- 최나빈. (2016).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최진원. (2011).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법정 허락제도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15(2), 218-254.
- 최진원. (2021).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 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정보법학, 25(1), 69-100.

2. 국외문헌

- Duranti, L., Franks, P. C. (Eds.). (2015). Encyclopedia of archival science. Rowman & Littlefield.
-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99, 5-12.
- Mcguinn, J., Sproge, J., Omersa, E., Borrett, C., Borghi, M., & Guibault, L. (2021).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Orphan Works Directive (2012/28/EU).
- Pearce-Moses R.(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 Terminology.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AA. (2009). Orphan Works: Statement of Best Practic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arid, Eden and Ben-Zvi, Omri, (2022). A Theoretical Analysis of Orphan Works.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40(3), 585-619.
- TNA. (2021). Orphan Works: Guidance for archive services on reasonable searches to identify rights holders. The National Archives.
- Vuopala, A. (2010). Assessment of the Orphan Works Issue and Costs for Rights Clearance. European Commission, DG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3. 웹사이트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2024.04.25.). URL:

<https://www.uci.or.kr/?menuno=1>

국가자료종합목록. (2024.04.25). URL:

<https://www.nl.go.kr/kolisnet/index.do>

미술은행. (2024.05.01.). URL:

<https://artbank.go.kr/home/main.do?loc=h00>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2024.04.27). URL: <https://k-artmarket.kr/>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2024.04.27). URL: <https://www.daarts.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04.25). URL:

<https://www.copyright.or.kr/main.do>

Britannica. (2024. 06. 17). URL:

<https://www.britannica.com/technology/photography>

Google News Initiative. (2024. 06. 11). URL: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ko-kr/resources/trainings/fundamentals/reverse-image-search-verifying-photos/>

Google Search Help. (2024. 06. 11). URL: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1325808?hl=en&ref_topic=3180360&sjid=1197874711562781937-AP

KOLAA IMAGE. (2024.04.25). URL:

<https://www.kolaaimage.com/img/imgMain.do>

Orphan Works Database. (2024.04.27). URL:

<https://euipo.europa.eu/orphanworks/>

ABSTRACT

A Study on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Use of Orphan Work in Photography Archives

Lee, Seon-Min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Recently, the value of photographs as records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leading to photography archives displaying or digitizing their photographic records for online access. A substantial number of these photographic records qualify as works, necessitat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for lawful use. However, many of these photographic records are orphan works, with the copyright holders and their whereabouts unknown. As a result,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it becomes impossible to lawfully use these orphan works. To address this issue,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llows the use of orphan work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under certain condi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application of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to facilitate the use of photographic records classified as orphan works in photography archives, examining its effectiveness and proposing improvements.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copyright characteristics of photographic records. Second, it reviews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and similar foreign copyright limitations to propose legal amendments for the use of orphan works in photography archives. Third, it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Significant Search’ procedures outl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can be applied to photographic records classified as orphan works.

The findings reveal several issues with applying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to photographic records classified as orphan works. First, archiv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entities eligible to apply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Second, the scope of works eligible for use under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is limited to published works, making it challenging to utilize a significant number of photographic records whose publication status is difficult to determine. Third, most sources designated for ‘Significant Search’ do not provide the whereabouts of copyright holders, rendering the identifica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their locations ineffective. Additionally, many designated sources are art institutions, with a lack of institutions specifically related to photographic records. Fourth, it is impossible to conduct ‘Significant Search’ on photographic records without clear titles or author name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First, expand the scope of eligible entities to include various institutions that service photographic records, including archives. Second, allow the use of unpublished photographic records as orphan works through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if a sufficient period has passed to presume

the author's death. Third, select sources that provide the whereabouts of copyright holders for 'Significant Search' and designate institutions related to photographic records as sources. Fourth, enable image-based searches for substantial investigations instead of text-based searches relying on titles and author names.

Key Words: Photography Archives, Photographic Records, Orphan Works, Copyright Law, Provision 35(4)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Significant Search